

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1. 신고법인

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
③ 소재지	④ 전화번호

2.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(해당되는 곳에 √ 표 기재)

[] ⑤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
[] ⑥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
[] ⑦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
[] ⑧ 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
[] ⑨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
[] ⑩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
[] ⑪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·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
[] ⑫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[] ⑬ 종중(宗中)

3.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(해당되는 곳에 √ 표 기재, 고시일자 기재, 호수 기재)

⑭ 공익법인등 (⑤ 또는 ⑥ 선택 시)	[] ㉓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[] ㉔ 학교·유치원 등 교육사업 [] ㉕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[] ㉖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[] ㉗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
⑮ 공공주택사업자 (⑦ 선택 시)	[] ㉘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사, 공공기관 [] ㉙ 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[] ㉚ 주택도시보증기금 또는 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
⑯ 주택조합 (⑧ 선택 시)	[] ㉛ 지역주택조합 [] ㉜ 직장주택조합 [] ㉝ 리모델링주택조합 ㉞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(년 월 일)
⑰ 정비사업시행자 (⑨ 선택 시)	[] ㉞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 [] ㉟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 ㊱ 사업계획승인 고시일(년 월 일)
⑱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(⑩ 선택 시)	[] ㊲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[] ㊳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㊴ 임대주택 호수()
⑲ 도시개발사업시행자 (⑪ 선택 시)	[] ㊴ 「도시개발법」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[] ㊵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㊶ 사업계획승인 고시일(년 월 일)
⑳ 사회적기업 등 (⑫ 선택 시)	[] ㊶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목적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인 경우 [] ㊷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목적이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

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합니다.

신고인(법인) (인)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고인 제출 서류	1. ⑤에 해당하는 경우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⑥에 해당하는 경우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⑦에 해당하는 경우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. ⑧에 해당하는 경우: 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. ⑨에 해당하는 경우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. ⑩에 해당하는 경우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7. ⑪에 해당하는 경우: 「도시개발법」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. ⑫에 해당하는 경우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「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또는 규약 사본 9. ⑬에 해당하는 경우: 「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중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	

작성방법

- ① ~ ④ 신고법인: 주택보유 법인으로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할 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 ② 세무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- ⑤ ~ ⑬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: 법인의 유형 중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- ⑭ ~ ㉔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: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며,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 ⑭ “법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”이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자를 말하고, 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”이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.
 ⑮ “공공주택사업자”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, ㉑ ~ ㉔ 중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 ㉑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 ⑯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: 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·설립한 법인
 ⑰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: 주택도시시기금 또는 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(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초과)를 출자(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)하여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
 ⑱ “주택조합”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합니다.
 ㉒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을 적습니다.
 ㉓ “정비사업시행자”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.
 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적고, 고시일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 고시일을 적습니다.
 ⑲ “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”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.
 ㉕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호수를 적습니다.
 ※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 ⑳ “도시개발사업시행자”란 「도시개발법」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「중립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4조의4제1항제5호의2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.
 ㉖ “사회적기업 등”이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.